

국제상업회의소 발간물

제645호(국제표준은행관습)에 관한 一考

김영훈*

-
- I. 서론
 - II.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관한 검토
 - 1. 연혁 및 구성
 - 2.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편에 대한 분석
 - III. 결론
-

I. 서론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UCP; 이하 UCP)은 상거래관습에 따라 생성된 신용장의 국제적 사용촉진을 위해 신용장거래에 수반되는 세계 각국의慣例·慣行 중 공통분모를 모은 것이며 경우에 따라 소개된 관행을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신용장거래 전반을 규율하지는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 강제력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장거래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구축된 Case Law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서류일치성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법원은 판결문에서 업격일치/상당일치라는 용어(혹은 표현)를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업격일치원칙/상당일치원칙이라는 개념(concept)이 파생되었다고 본다.

이처럼 수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도 서류심사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UCP는 제5차 개정(이하 UCP 500)에 이르러 국제표준은행관습(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

* 군산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시간강사.

나 국제표준은행관습이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여야 할지 의문스러웠을 뿐 아니라 이 새로운 용어의 도입은 업계일치의 원칙이 상당일치의 원칙으로 전환되어 간다는 의미인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왔다.

그 후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2002년 말부터 시작된 작업의 결과로 2003년 1월에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이하 ISBP)가 ICC Publication No.645로 출간되었다. 본 공표물은 머지않아 거의 모든 은행이 서류검토시에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ISBP는 UCP500 제13조에 언급된 ‘국제표준은행관습’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서류심사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다루고 있어 가벼운 주제로 판단할 수 있으나, 그것은 UCP500의 49개 조항 속에 반영되어 있는 많은 상거래관습과 그 후의 법원의 판결례에 의해 확립된 관습 및 국제상업회의소의 질의응답을 통해 구축된 논리들을 상당부분 반영하느라 총 200개 문단으로 구성되어 그 양이 방대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ISBP의 연혁과 구성 등을 간략히 언급한 후 일반원칙을 다루고 있는 39개의 문단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관한 검토

1. 연혁 및 구성

① 연혁

본 공표물은 지난 2000년 5월 회의를 통해 작업반을 구성한 이래 2년 반 동안의 작업의 결과물인데, 초기 작업은 각 국의 국내위원회와 그 회원들에게 자신들의 국가 혹은 은행에서는 과연 서류를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가를 문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의에 대해 약 39개의 국내위원회와 상당수의 개별 은행들이 답변을 해주었고, 그 결과 이러한 방대한 자료들을 종합·정리하기 위해 무려 14번

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초안만도 본 공표물을 포함해서 5개가 만들어졌다.

그 후 2002년 10월 로마에서의 회의에서 승인되어 2003년 1월에 ICC Publication No.645로 공표 되었다.¹⁾

② 구성

언급된 바와 같이, 본 공표물은 UCP500의 49개 조항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내용 뿐 아니라 그 동안의 법원의 판결례에 의해 확립된 관습 및 국제상업회의소의 질의응답을 통해 구축된 논리들을 반영하느라 그 양이 방대하다.

그 구성을 보면 먼저 크게는 'Introduction'을 제외하고 11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아래의 표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부분은 주로 서류를 중심으로 나눠져 있다.

한편 11개의 각 부분은 수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에 다시 여러 개의 문단을 두어 서류 검토 시 살펴야 할 내용을 상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공표물은 11개 부분, 91개 항목, 총 200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Preliminary considerations
General principles
Drafts and calculation of maturity date
Invoices
Ocean/marine bills of lading(covering port-to-port shipment)
Charter party bills of lading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Air transport documents
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s
Insurance documents
Certificates of origin

③ 의의

첫째, 본 공표물은 UCP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UCP를 완전하게

1) 본 공표물의 서문(foreword) 참조.

하는 것이다.²⁾ 즉, UCP가 원칙을 말하는 규범이었고, 이에 따라 다소나마 현실과 유리된 것이었다면 본 공표물은 현장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UCP상의 – 어떤 면에서는 공허할 수 있는 – 원칙을 육화함으로써 원칙과 현실응용의 간극을 메우고 있다 하겠다.

본 공표물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본 공표물은 UCP상의 규칙이 일상의 업무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국제표준은행관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공표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무의미하거나 혹은 어처구니 없는 작업으로 볼 수도 있다.

UCP를 단순히 규칙으로 제정할 뿐 법으로 만들지 않는 것은 변화하는 상거래관습을 반영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법으로 제정하게 되면 제정당시의 상거래관습까지도 동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표준은행관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술하여 책으로 발간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 즉, 국제표준은행관습을 본 공표물에 수용된 것으로 한정해석하여 급변하는 기술적 진보에 의해 영향 받는 은행의 업무관행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상거래관습과의 마찰증가를 結果하여 신용장거래당사자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용장사용을 통해 얻고자 하는 효용이나 기대를 감소시켜 신용장 사용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작업반은 관습들을 문서화하고자 하는 본 작업에 대해 신중한 태도로 임하였고 이는 초안 작성 후 각 국내위원회로부터 주석을 요청했던 여타의 작업과 달리 먼저 각 국내위원회와 회원들로부터 체크리스트를 요청했던 점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한편 본 공표물은 국제표준은행관습을 구체화함으로써 각 국가나 지역마다 상이하였던 관습을 통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이한 관습은 곧 신용장거래에서의 분쟁 및 거절의 높은 빈도와 관련 있었던 것이므로 본 공표물의 보급 및 교육에 의해 서류거절의 빈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preliminary considerations’ 부분은 ‘the application and issuance of the credit’이라는 항목으로 5개의 문단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2) 나아가 본 공표물은 언급한 것처럼 UCP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UCP와 독립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용장상에 본 공표물에 대한 명시적으로 기재는 삼가야 할 것이다.(본 공표물의 Introduction 참조)

세 가지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먼저 본 공표물이 갖는 두 번째 의의로 서류거절과 같은 위험은 신용장의 개설단계에서의 주의의 경주를 통해 상당부분 감소 혹은 제거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용장거래가 독립성과 추상성원칙 하에서 작동하는 것이기는 하나 신용장은 원인거래의 이행 - 통상 대금결제 -을 돋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어서 신용장상의 기재내용은 원인거래의 내용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원인거래에서의 매도인이 제공해야 할 서류와 그 기재내용에 대한 숙지 그리고 이를 반영한 신용장의 개설은 곧 신용장거래의 원활한 이행 나아가 서류수리를 담보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공표물은 ISBP para.1로부터 para.5까지를 할당하여 기본거래, 신용장개설신청 및 신용장 개설 시 충분한 주의의 경주를 권고하고 있다.

세 번째로 UCP500 제5조와 관련하여 그 동안 언급해왔던 약관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서류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 약관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은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어떤 약관의 의미가 모호한 경우 이를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 신용장 개설신청서 혹은 조건변경신청서상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이 그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인데, ISBP para.2에서는 개설의뢰인이 모호함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장거래 역시 사적자치원칙의 한 형태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됨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ISBP para.3에서는 환적을 다루고 있는 UCP500 제23조 (d)항을 예로 들면서 어떤 조항 혹은 어떤 조항의 특정 항목만을 적용배제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2.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편에 관한 분석

일반원칙편은 총 39개의 문단으로 아래의 16가지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원문번역 후 이를 분석하는 순서로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³⁾

abbreviations
certification and declarations
corrections and alterations
dates
documents for which the UCP Transport Articles do not apply
expressions not defined in UCP
inconsistency in the documents
issuer of documents
language
mathematical calculations
misspellings or typing errors
multiple pages and attachments or riders
originals and copies
shipping marks
signatures
title of documents and combined documents

(1) abbreviations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어의 사용은 정당하다. 예컨대, Limited 대신에 Ltd. 를 사용하거나, International 대신에 Int'l을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한 경우라도

3) 본문에서 중고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원문에 대한 번역에 해당한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발간된 공표물(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에 대하여 “본 공표물”이라 표기하고 또한 각 문단에는 1부터 200까지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 문단을 나타낼 때에는 ISBP para.1, para.2 등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은행은 이를 이유로 서류를 거절할 수는 없다."

"/"는 상이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문장 대신에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Doc.470/TA.294.에서는 개설은행이 Street를 St.로 Limited를 Ltd 등의 약어사용을 하자로 주장하여 지급 거절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 국제상업회의소는 "비록 이러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규정이 UCP500에는 없으나 …(중략) 국제표준은행관습에 따라 위와 같은 약어사용은 지급거절을 정당화하는 하자가 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는 상이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가 아닌 문장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본 문장에서는 'may'나 'must'와 같이 명료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should'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만일 수익자가 작성한 서류에 위의 부호가 사용되었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 예컨대 은행은 이를 이유로 서류를 거절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2) certifications and declarations

"증명 혹은 선언 등은 독립된 서류를 통해서 확인될 수도 있으며 그와 같은 사항이 (독립된 서류가 아닌) 다른 서류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만일 (독립된 서류가 아닌) 다른 서류-서명 및 일부된-에 포함되어 있다면, 동 기재사항에는 별도의 서명이나 일부가 필요치 않다. 단, 동 기재가 당해 서류를 발행 및 서명한 자에 의해 행해졌음을 조건으로 한다."

선화증권, 보험증권 또는 환어음 등의 서류와 달리, 증명서 등은 단지 어떤 사항에 대한 확인을 목적으로 요구되는 것일 뿐 그것이 특수한 용도로의 재사용을 염두에 두고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증명 혹은 확인을 요하는 사항이 신용장에서 통례적으로 요구되는 3대 서류(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나 기타 추가로 제시된 서류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면, 단지 어떤 사항의 증명만을 목적으로 분리(독립)된 서류가 제시될 필요성은 낮다고 하겠다.

(3) corrections and alterations

"수익자 이외의 자가 작성한 서류의 기재사항의 수정은 당해 서류발행자 또

는 서류발행자로부터 수권된 자가 인증해야만 한다. 사증 등을 받은 서류의 기재사항의 수정은 당해 서류에 사증 등을 행한 자가 인증해야만 한다. 인증에는 당해 인증을 행한 자 및 서명 혹은 이니셜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서류 발행자 이외의 자가 인증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에는 그 자격을 기재해야만 한다.”

“환어음 이외에, 수익자가 발행한 사증 등을 받지 않은 서류의 기재사항의 수정은 인증할 필요가 없다.”

“동일 서류에 여러 형태의 스타일·크기·수기의 사용은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서류가 하나 이상의 수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각 수정에 독립적으로 인증되거나 (단지 하나의 인증만이 있다면) 하나의 인증이 모든 수정사항과 연결되어야만 한다.”

① 첫째 문단은 UCP500 제15조와 관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 조에 따르면 은행은 서류의 진정성, 위조, 법적 효력 등에 대해 면책된다. 한편 이미 작성 완료된 서류의 기재내용의 수정이 있다면 이는 서류를 검토하는 당사자의 눈에 쉽게 떨 것이므로 서류검토자로 하여금 이 수정이 해당 서류의 작성자에 의한 것이었는가를 확인토록 함은 과도한 것이라 할 수 없다.⁴⁾

본 문단에 따라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⑦ 수익자가 작성한 서류와 ⑧ 수익자 이외의 자가 작성한 서류로 대별(大別) 할 수 있는데, 수익자가 작성하는 서류와 달리, 수익자 이외의 자가 작성한 서류의 기재내용의 수정에 대해서는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인지 먼저 수익자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수익자가 불의한 목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수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스스로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수익자는 이미 완성된 서류를 폐기하고 새로이 작성할 수 있고 또한 이미 완성된 서류의 기재사항을 수정하게 되면 서류검토자의 주목을 끌 가능성성이 상대적으

4) 물론 이는 서류 작성자와 수정한 자 사이의 문면상 상위를 확인토록 요구하는 것일 뿐 수정으로 인한 법적 효력을 확인토록 하는 것은 아니다.

로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정보다는 재작성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본다.

둘째, 일반적으로 수익자와 은행사이에 제3자가 개입될 가능성은 낮거나 거의 없다. 수익자는 신용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취합하여 은행에 제시하는 자로서 이 과정에 제3자는 개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자가 작성한 서류의 내용을 수정 등의 방법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이러한 이유들에 비춰볼 때 수익자가 작성한 서류의 기재내용의 수정 등의 주체는 제3자가 아닌 반드시 수익자 자신이라고 할 것이며 은행원 역시 이러한 기대를 갖고 서류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원은, 서류에 달리 표기되지 않았다면, 인증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정은 그 작성자가 – 수익자 – 행한 것으로 취급할 것이고, 이에 따라 수익자가 작성하는 서류의 경우 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수익자 이외의 자가 작성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첫째, 수익자는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제시하는 자이고 수익자 이외의 자들은 필요서류를 발급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할 뿐이라는 점 둘째, 신용장거래에 국한해서 생각할 때 필요서류의 내용변경을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자는 수익자라는 점 셋째, 이로 인해 수익자에게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유인은 물론 기회(혹은 가능성)가 있다는 점 등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작성하는 서류와 달리 수익자 이외의 자들이 작성하는 서류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작성자 혹은 수권된 자에 의한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② 한편 두 번째 문단에 의하면, 수익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다시 ㉠ 사증 등이 필요한 서류와 ㉡ 그 이외의 서류로 나눌 수 있으며, 사증 등이 필요치 않는 서류의 기재내용 수정에 대해서는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 이외의 서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와 달리 수익자 이외의 자가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는 인증을 요구하면서 그 서류를 위와 같이 나누지 않고 있으므로 양자에 대해 모두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수익자가 작성하는 서류	사증 등이 필요한 서류	인증 필요
	사증 등이 필요하지 않은 서류	인증 불필요
수익자 이외의 자가 작성하는 서류	사증 등이 필요한 서류	인증 필요
	사증 등이 필요하지 않은 서류	인증 필요

③ 본 항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의문이 있다.

첫째는 ‘correction’과 ‘alteration’ 간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⁵⁾

필자의 얇은 생각으로는 사전적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서류상 기재내용을 변경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취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영미법상의 전통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영미법은 관습법 혹은 판례를 넓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성문법을 좁게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탓에 특정 사안에의 (법률의) 적용여부는 법문에 사용된 용어에 영향받게 될 가능성 있다. 한편 그로 인한 부적절함을 예방하기 위해 유사한 용어를 나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계약을 의미하는 단어로 ‘contract’ 뿐 아니라 ‘agreement’ 등 동일한 의미의 여러 단어를 조문에서 나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⁶⁾

따라서 본 자료를 만들에 있어 영미법계의 전통이 반영되었다면, 위의 해석에 무리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입법과정에 대한 자료가 없어 단정할 수는 없다.

둘째는 첫 번째 문단에서 “… 사증 등을 받은 서류의 기재사항의 수정은 당해 서류에 사증 등을 행한 자가 인증해야만 한다.”라는 부분에 관한 것이다.

수익자 이외의 자가 작성한 서류의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와 같이, 사증을 받은 서류와 그렇지 않은 서류를 구별하지 않은 채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용된 부분의 앞 문장을 통해서도 사증을 받은 서류의 기재내용의 수정에 대해 인증이 필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인용된 부분은 중복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

셋째는 첫 번째 문단에서 사용된 “information”과 “data”와 관련된 것이다.

5) 지난 3월 21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ISBP 설명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다.

6) 서희원, 『영미법강의』, 박영사, 1994, p.

'information'은 어떤 방법 혹은 어떤 것을 통해 전달된 모든 것을 말한다. 물론 'information'은 data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즉, 서류에 기재된 것은 'data'이며 이 기재된 'data'는 상대방에게 'information'을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를 함께 사용하기보다는 'data'만을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다.

④ 한편 본 공표물에서 다루고 있는 서류 중 환어음과 각종 운송서류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corrections and alterations' 항목을 두고 있고, 상업송장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는 상업송장은 수익자가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이상에서 언급한 수익자가 작성하는 서류에 해당되어 별도의 규정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물론 환어음도 수익자가 작성한다는 점에서는 송장과 차이가 없으나 양자는 사증 등의 필요여부에 따라 구별되므로 환어음을 송장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두 번째 문단에서도 환어음을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본 항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인증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았을 때, 본 항은 환어음과 각종 운송서류를 제외한 상업송장의 검토시에만 고려가 요청될 뿐이어서 본 항의 필요성이나 본 공표물의 구조의 적절성(혹은 경제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본 공표물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서류의 검토시에는 본 항의 고려가 요청되므로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4) dates

"환어음, 운송서류, 보험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은 때에도 일부되어야 한다. 언급된 이외 서류의 일부요건은 함께 제시된 다른 서류의 일자를 참조하도록 한 경우에도 충족될 수 있다. 독립된 서류로 된 증명서에 일자가 표기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으나, 당해 서류의 일치여부는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증명서의 형태와 (신용장상의) 문구 그리고 증명서에 기재된 문구에 달려있다. 기타 서류에 일부가 필요한가 하는 점은 당해 서류의 성격과 내용에 달려있다."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그리고 선적전 검사증명서를 포함하여 모든 서류에

선적일 이후의 일자가 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용장에서 선적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한다면, 당해 서류는 - 그 표제나 내용에 의해 - (신용장에서 요구한) 사건이 선적일 또는 이전에 발생했음을 나타내야만 한다. '검사증명서'를 제시토록 한 것은 선적전 사건의 증명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모든 서류에는 당해 서류가 그 제시일 이후에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서는 안된다."

"서류의 준비일과 그 이후의 서명일 양일자가 표기된 서류는 서명일에 발급된 것으로 취급된다."

"UCP500 제43조(a)항의 서류제시기간에 대한 규칙은 (신용장에서) 하나 이상의 원본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운송서류란 UCP500 제23조로부터 제29조까지에 규정된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간보다 늦지 않게 제시되어야만 한다."

"일자 혹은 사건에 관계된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문구 중

'within 2 days after'는 사건 당일로부터 사건일 2일 후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not later than 2 days after'는 기간이 아닌 최종일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at least 2 days before'는 어떤 사건의 2일 이전보다 늦지 않게 어떤 일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때 당해 사건이 얼마나 일찍 발생되어야 하는가 하는데 대한 제한은 없다.

'within 2 days of'는 어떤 사건 2일 전부터 2일 후까지의 기간을 나타낸다."

"within'은, 그것이 일자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때, 기간계산시에 당해 일자를 제외한다."

"일자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11월 12일은 12 Nov 03, 12Nov03, 12.11.2003, 2003.11.12, 11.12.03, 121103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의도된 일자가 제시된 당해 서류 혹은 다른 서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모든 표현은 허용된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월의 표시는 숫자가 아닌 그 명칭을 사용할 것이 권고된다."

① 첫째 문단에 따라, 3대 서류인 환어음·운송서류·보험서류에는 일자가 표기되어야 한다.

⑦ 먼저 환어음은 그 법률 효과의 발생과 발행된 형식간에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엄격한 요식증권으로, 특별히 일부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여 그 사항이 불비된 경우에는 환어음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환어음의 발행일자는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그 일자의 미기재는 환어음의 효력은 물론 환어음으로서 탄생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이러한 발행일은 발행일후확정일자출급어음의 경우에는 만기일의 결정에 이용되고, 일람출급어음은 지금제시기간에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은 인수제시기간의 산정과도 관련이 있는 중요사항이다.⁷⁾

따라서 환어음상의 일자는 신용장상의 요구에 관계없이 필요하다.

㉡ 다음으로 운송서류의 경우, 운송서류의 일자는 통상 - 예외가 없지는 않지만 - 운송인의 운송물 수령 혹은 운송수단에의 적재 사실 및 그 사건의 발생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운송서류에 또 다른 일자의 표기가 없는 경우, 표기된 일자에 대한 (서류검토자인 은행에 의한) 위와 같은 해석 및 취급에 대해, 수의자와 개설의뢰인이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이처럼 운송서류의 일자는 운송인측의 운송물 수령일인 것이나, 시각을 달리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즉, 수의자와 개설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기재된 일자는 매도인에 의한 물품제공(인도)일에 해당된다.

주지하다시피, 무역거래(계약)에서는 품질, 수량, 가격, 선적, 결제를 5대 조건으로 들고 있는데, 이는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합의되고 또한 그렇게 취급될 만큼 중요한 사항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언급된 사항에 대한 위반은 계약의 봉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때 선적이란 매도인에 의한 물품제공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거래는 모두 운송인에 의한 공간극복활동인 운송서비스에 의해 행해지므로 선적이란 매도인에 의한 운송인에의 물품인도가 된다. 따라서 이때 물품수령시 발급되는 운송서류상의 일자는 기본거래에서의 매도인측의 중요의무 중 하나인 선적의무의 이행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만약 운송서류에 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합의된 기간내의 선적의무의 이행을 증명할 수 없는 불완전한 서류로 그 가치가 낮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운송서류상 일자표기는 신용장상의 요구에 관계없이 필요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운송서류 중 무역거래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선화증권을 들

7)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제3개정판), 홍문사, 1999, p. 316 ; 최기원, 상법학개론(신청2판), 박영사, 1997, p.561.

수 있는데, 선화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요식성을 갖기 때문에 운송서류에 일자 표기가 필요한 이유를 환어음과 동일한 논리로 해석 할 수 있겠으나, 선화증권이 유가증권으로 요식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환어음과 동일한 정도의 요식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⁸⁾ 및 본 문단에서 언급된 운송서류에는 선화증권을 포함하여 UCP500 제2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 아닌 운송서류들도 포함된다는 점에 비추어 그 논리에 공백이 있다.

(e) 마지막으로, 보험서류의 경우에도 유가증권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일자표시의 필요성을 해석 할 수 있으나 운송서류와 마찬가지로 보험서류도 - 견해가 나뉘어져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으로 보는 - 보험증권 뿐 아니라 (신용장에 달리 규정이 없다면, UCP500 제34조 (d)항에 따라 보험증명서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유가증권이 아닌 보험증명서도 포함되어 위 논리에 공백이 있으므로, 일자표기의 필요성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 즉, 위험담보시기와의 관계에 비춰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먼저 보험기간은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자의 위험담보책임이 존속되는 기간으로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호받은 시·공간적 한계를 말하고, 보험계약기간은 보험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때 예정보험계약이나 소급약관에 의해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과의 상위가 발생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양자는 일치한다. 따라서 - 일반화 할 수는 없겠으나 - 보험서류에 표기된 일자로부터 보험자는 책임을 부담하고 피보험자는 보호받는다고 하겠다.

한편 무역거래에서 통상 피보험목적물은 늦어도 선적시로부터 위험에 노출될 것인데 일반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시기는 운송서류상의 일자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예정보험계약이나 소급약관의 적용에 의해 예외는 있겠으나, 보험서류상에 표기된 일자와 운송서류상의 일자를 비교함으로써 보험자의 위험담보개시시기와 피보험목적물이 위험에 노출된 시기와의 일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보험서류상의 일자는 피보험자 - (신용장을 대금결제

8) 선화증권은 요식증권이기는 하지만, 어음·수표와 같은 엄격한 요식증권은 아니기 때문에, 법정사항 가운데 약간의 기재를 빠뜨린 경우에도 선화증권의 본질상 필요한 기재를 갖추는 한, 선화증권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예컨대 수화인·송화인·운임·그 작성지 및 작성 연월일 등의 기재는 불가결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험결하여도 선화증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수단으로 선택한 경우, 매도인이 보험서류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경우인) CIF 조건의 계약상의 매수인 -에게 이러한 공백의 유무를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용장상 요구에 관계없이 보험서류에 일자의 표기가 요구되는 것이다.

나아가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사이의 공백의 존재는 곧 매수인이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못하는 보호를 받음을 의미하고 이는 곧 기본계약상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의무불이행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독립추상성원칙에 따라 기본거래에 대한 사실확인 의무가 없는 은행조차도 제시된 서류의 일자만을 통해 간단히 그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그 일자 표기의 필요성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④ 한편 기타 서류의 경우, 그것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이기 이전에 기본계약에서 합의된 바 매도인에게 요구되고 있는 사항의 이행을 증명하는 자료라는 점에서는 위 3대 서류와 동일하나 그 요청되는 사항의 이행시기는 운송 및 보험과 동일한 정도의 중요도를 갖지 않는다는 점, 그 결과 당해 서류상 일자의 표기여부 및 그 일자 자체는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유에서 본 항에서는 3대 서류와 기타 서류를 구별, 전자에 대해서만 신용장상의 요구에 관계없이 일자표기를 요청하고 있고 후자에 대해서는 신용장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서류 그 자체에의 일자표기는 물론 다른 서류상의 일자를 참조하도록 한 경우에도 서류를 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② 두 번째 문단은 본질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부분으로, 어떤 사실의 발생과 그 사실의 발생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서류와의 관계에서 그 사실의 발생 이후에 관련 서류가 발급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가정(혹은 상식)은 외면한 채 서류상의 일자 - 발급일 - 만을 중시, 당해 일자를 사건의 발생일로 해석하던 관행을 파기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실제로 그 발행일 이전 물품선적일자를 기재한 선적선화증권과 관련된 문의 및 분쟁도 여러 건 있었는 바 결론은 발행일 이외에 표기된 일자를 물품수령일로 해석하고 있다.⁹⁾

③ 네 번째 문단을 검토하기에 앞서 신용장에 표기되는 일자를 보면 일반적으로 4가지를 볼 수 있다. 신용장발행일, 선적일, 선적서류제시기간, 유효기간이 그것인데, 이 중 선적서류제시기간은 유효기간과 함께 고려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통상 선적일로부터 1주일 후의 일자로 선적서류제시기간을 설정하고 그 후 1주일을 유효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선적서류제시기간으로 인한 문제발생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한편 선적서류제시기간을 표기하지 않은 채 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도 있는데, 선적서류제시기간의 계산방법 및 선적서류제시기간과 유효기간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 경우이다.

失笑를 금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하기 하나 선적서류제시기간의 계산방법을 적어보면, 먼저 신용장에 선적서류제시기간을 표기한 경우에는 그 일자까지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적일 익일로부터 21일까지로 계산한다. 한편 수익자는 어떤 방법으로 확정되었건 선적서류제시기간과 유효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일자까지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즉, 수익자의 지급을 요청할 권리ς - 일치되는 서류의 제시인 경우 - 선적서류제시기간과 유효기간 양자를 충족하는 일자까지 보장될 뿐이다.

한편 선적서류라고 하는 것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통칭하는 것이어서 여기에는 운송인이 송화인으로서 물품을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운송서류를 포함하는 것인데 이러한 운송서류는 통상 수입국에서의 물품수령시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익자의 신속한 서류제시 및 개설의뢰인에 의한 서류확보는 곧 물품의 신속한 확보 및 유통을結果하는 것이므로 신용장에서 선적서류제시기간을 두고 있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다.

다만 수입국에서의 물품확보에 운송서류가 활용되고 있으나 그 이용은 일반적으로 원본의 경우에 한하므로 - 적어도 수입국에서의 매수인에 의한 물품수취시 - 사본의 유용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서류가 사본이라면 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당해 운송서류사본의 신속한

9) 서울지법 1999.11.19. 선고, 99가합11392 판결 ; 동 판결에 대한 주석으로는 채동현, "선적선화증권의 선적일 기재와 신용장 서류 수리요건," 『판례월보』 369호, 2001.9. 참조.

제시 및 확보는 요청되지 않는 사항이 되고 그 결과 선적서류제시기간의 의미는 없다. 즉, 운송서류의 사본이 요청되는 경우라면, 당해 사본의 제시일자와 물품확보일자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므로 사본의 경우에는 선적서류제시기간에 대한 조항을 적용할 실익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문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본 문단은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본 문단의 내용은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Doc.470/TA.289Rev.)과 상충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즉, Doc.470/TA.289Rev.에서는 상업신용장이나 스텠드바이신용장에서 운송서류의 사본만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운송서류제시기간에 대하여서는 규정이 없는 경우, UCP500 제43조 a)항이 적용되는가 하는 질의를 다루고 있는데, 국제상업회의소에서는 UCP500 제43조 a)항을 인용하면서 “개설된 신용장이 상업신용장인가 스텠드바이신용장인가에 관계없이, 또한 제시될 서류가 운송서류의 사본이건 원본인가에 관계없이, 신용장상에 본 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는 한, 본 조항은 적용된다. 따라서 서류는 규정된 기간 또는 선적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제시되어야만 한다. (중략)“라고 답변하고 있다.

④ 다섯째 문단은 일자 혹은 기간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장상의 일자와 함께 사용되는 전치사 등을 해석하고 있는 UCP500 제47조 - 본 조는 특별히 선적과 관련된 일자를 다루고 있다 - 의 (b)항에 따르면 ‘after’는 기재된 일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규정에 따라 ‘within 2 days after 일자’의 경우에는 당해 일자를 제외하고 즉, 당해 일자 다음날로부터 2일을 기산한다. 이것은 ‘not later than 2 days after 일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역시 익일로부터 기산하게 된다. 다른 점은 전자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기간이 아닌 최종일자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within 2 days after 일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2일의 기산시점이 기재된 일자의 익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 기간에 당해 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즉, 총 기간을 3일이 되도록 계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언급한 바와 같이 UCP500 제47조 (b)항에서는 'after'의 경우 당해 일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총 2일이 되므로 본 문단의 해석은 UCP와 상충된다고 본다.

물론 본 문단이 선적일에만 관련된 것으로 명시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UCP와 충돌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겠으나, ISBP para.45에서 환어음상의 일자(특별히 환어음상의 만기와 관련된 after)의 해석을 다루고 있다는 점, 'dates'라는 표제하에 속하는 ISBP para.13, 14, 15, 16이 서류의 발급일 등을 다루면서 선적서류 혹은 선적일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으며 para.16이 선적서류제시기간을 다루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본 문단의 내용이 UCP와 충돌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 문단에서와 같은 해석을 따른다면, after와 from과의 구별은 의미 없는 것이 된다. 즉, 모두 기재된 일자를 포함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해석은 언급한 ISBP para.45(d)와 정반대의 해석이 된다. 즉, 환어음의 만기일과 관련되어 after와 from이 사용되면 기재된 일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기타 일자와 관련되어 사용되면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가 옳다면 이는 결국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⑤ 여섯째 문단을 본다.

먼저 'a date'가 'within July 15'처럼 특정일자를 의미한다면 7월 15일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재된 경우 당해 일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따른 해석이므로 본 문단의 해석은 이러한 상식과 충돌된다.

나아가 이와 같이 사용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본 문단 후반부에 있는 'period'라는 용어의 사용이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 즉, 위와 같이 특정의 일자를 기입했다면 이는 기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간의 계산(calculation of the period)이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within 10 days after July 15'와 같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기간을 설정한 것이므로 문장구조에 의문은 없어진다. 한편 이러한 전제가 옳다면, 제외되는 일자는 7월 15일이 된다. 즉, 7월 15일을 제외한 10일이 계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7월 15일이 기간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within’이 아닌 ‘after’가 사용된 결과이므로 기간의 계산방법은 동일하나 논리는 상이한 것이 된다. 따라서 본 문장처럼 별도의 항목을 두어 ‘within’을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within’ 사용시의 일자해석을 위한 독립된 문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ISBP para.17(d)를 들 수 있겠다. ISBP para.17 (a)는 언급한 바와 같이 ‘after’ 때문에 기재된 일자를 제외하고 기간을 계산할 수 있으나, (d)항과 같이 표기된 경우에는 그 합리적 해석이 요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ISBP para.17과 para.18을 연계해서 바라본다면 이는 ‘within’을 사용하고 있는 (a)와 (d)의 해석에도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인데, (a)의 경우에는 필요없고 단지 (d)의 해석만을 위해 필요하고 또한 이를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것도 논리가 서지 않아 그 존재의 필요성유무에 대해 쉽게 예단할 수 없다.

(5) Documents for which the UCP Transport Articles do not apply

“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서류들 - 예를 들어, Delivery Order, Forwarder’s Certificate of Receipt, Forwarder’s Certificate of Shipment, Forwarder’s Certificate of Transport, Forwarder’s Cargo Receipt and Mate’s Receipt - 은 운송계약을 반영하지 못 할 뿐 아니라 UCP500 제23조로부터 제29조에 정의된 운송서류가 아니다. 그 자격으로, UCP500 제43조가 위 서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서류들은 UCP에 독립된 규정이 없는 기타의 서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 즉, 제21조에 따라 - 검토될 것이다. 어느 경우에나, 모든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간보다 늦지 않게 제시되어야 한다.”

“운송서류의 사본은 UCP500 제23조로부터 제29조 그리고 제43조의 목적상 운송서류가 아니다. UCP500의 운송서류조항은 원본운송서류가 제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용장이 원본이 아닌 사본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당해 신용장은 (운송서류사본에) 기재될 세부사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사본이 제시된 경우, 당해 서류가 서명, 일자 등을 증명할 필요 없다.”

① 첫째 문단의 내용은 ISBP para.16과 함께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para.16에서는 그 제시서류에 운송서류원본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선적서류 제시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UCP500 제43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다루면서 운송

서류란 UCP500 제23조로부터 제29조가 적용되는 것들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본 문단으로 돌아와서, 본 문단에서는 몇몇 서류를 나열한 후 동 서류들이 UCP500에서 정의하고 있는 운송서류가 아님을 재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para.16과 본 문단은 동일사항을 재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겠다.

한편 ISBP의 서문(Introduction)에서 ISBP에 소개된 몇몇 예들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비록 본 문단에서 열거된 것이 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유형에 속하는 것인가 하는 점은 알 수 없으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할 때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만일 배타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보면, 열거되지 않은 서류는 UCP500 제23조로부터 제29조가 적용되는 운송서류라는 해석 및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배타적인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면, 열거된 서류에 대하여 UCP상의 운송서류 규정이 미적용되는 이유는 - 그 사용된 표제가 아닌 - 그 성격 혹은 기능에 있어서의 차이에 기인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열거된 서류가 UCP에 규정된 운송서류와 동일한 성격 및 기능을 갖게 된다면 비록 표제는 상이할지라도 UCP상의 운송서류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나아가 UCP 제43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 항의 'as such'라는 부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자격으로' 혹은 '그것만으로'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위에 열거된 서류는 그 자격으로는 UCP 제4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만일 자격이 바뀐다면 - 표제에 관계없이 -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다고 본다.

② 오히려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ISBP para.16의 내용중 일부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본 문단으로 인해 운송서류 사본의 일치여부는 - UCP의 운송서류의 조항이 아닌 - 위 문단에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제21조에 따라 검토된다. 따라서 신용장에서 그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제시된대로 수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은 위 문단의 내용을 유추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인데, 본 문단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한편 ISBP가 UCP와 동일한 정도의 규범적 성격을 갖는 자료라 할 수는 없고 다만 일치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그 내용의 중복여하에 관계없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본다면, 중복여부를 문제점으로 부각시킬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있다.

(6) Expressions not defined in UCP

“shipping documents,” ‘stale documents acceptable,’ ‘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 ‘exporting country’ 등의 표현은 – UCP에서 당해 표현을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사용되었다면, 그 의미가 명백하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 표현은 국제표준은행관습하에서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shipping documents’는 운송서류 뿐 아니라 – 환어음을 제외한 –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서류를 의미한다.

‘stale documents acceptable’은 선적일 후 21일보다 늦지 않게 제시된 서류는 – 그것이 신용장의 유효기간내에 제시된다면 – 수리된다.

‘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은 환어음을 제외한 그러나 송장을 포함한 모든 서류는 수익자 이외의 자에 의해 발행될 수도 있다. 운송서류에 수익자 이외의 자를 송화인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 개설은행의 의도였다면, 이 표현은 – UCP500 제31조 (iii)에 의해 이미 허용되고 있으므로 – 불필요하다.

‘exporting country’는 수익자가 거주하는 국가 및/또는 물품의 원산국, 및/또는 운송인의 물품수령국 및/또는 운송이 개시된 국가를 의미한다.”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등의 표현은 어느 경우에도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된 경우, 은행은 이를 무시할 것이다.”

① 위 사항들은 이미 여러차례 질의 및 회신을 통해 다루어진 내용 – ISBP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항이 그러하겠지만 – 에 해당된다.

② 먼저 첫째 문단에 따라, ‘shipping documents’는 신용장거래에서 혹은 기본거래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할 모든 서류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transport documents’는 물품의 인도 즉, 운송과 관련된 서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면 그렇다면 전자를 ‘선적서류’로 후자를 ‘운송서

류'로 해석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처럼 선적서류와 운송서류를 구별할 실익은 ISBP para.16과 para.20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제시된 서류에 운송서류가 포함되면 UCP500의 해당 조항에 비추어 일치여부를 판단하고 또한 제43조의 제시기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나, 선적서류에 UCP의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형태의 서류 혹은 사본이 포함되면 당해 제시된 서류 - 선적서류 -에는 운송서류가 없는 것으로 운송서류 조항이 아닌 제21조에 따라 일치여부를 판단하고 제43조 역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초기의 UCP에서는 'transport document'를 사용치 않고 있다. 즉, 1933부터 1972년까지는 'shipping document'를 쓰고, 1983년부터 'transport document'를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1933년 제18조에서는 'shipping documents'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본 표현이 사용된 문장은 물품의 외관상 양호한 상태에 관한 유보를 기재한 서류를 운행이 수리 거절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이 서류(shipping document)는 -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 운송서류(ISBP상의 transport document)를 나타낸다고 본다. 이 표현은 1951년 제18조, 1962년 제16조, 1982년 제16조 (d)항, 제17조, 제18조에서 변화 없이 사용되다가 1983년에 이르러 변경되고 있다.

즉, 198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D. Documents'라는 표제 하에 4개의 하위 그룹으로 나눈 후 D.1에 'Transport Documents'하 하여 10개 조항에서 운송서류를 다루고 있으며 각 조항에서 'shipping document' 대신 'transport document'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운송서류 관련 조항들에서 'transport document'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 'shipping document'와 'transport document'란 표현의 정의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사용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논의를 통해 'shipping document'는 운송과 관련된 서류 외를 포괄하는 용어인 탓에 운송서류만을 의미하는 표현인 'transport document'로 대치되었다고 보겠다.

그러나 ISBP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현실에서는 여전히 구 규칙에서 사용된 용어인 'shipping document'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항은 이에 따른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로 이해할 수 있겠다.

㉡ 두 번째 사항인 'stale documents acceptable'은 보세창고도조건에 의한 수출입(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BWT)에서 활용되는 신용장하에서 볼 수 있는 문장인데, 통상 'stale B/L acceptable'이라는 문장이 많이 쓰인다. 이때 'stale'이란 선적서류(ISBP에 의한 운송서류가 포함된) 제시기간이 경과한 것을 의미하므로 신용장에 선적서류제시기간이 표기된 경우라면 당해 일자 이후 혹은 미표기된 경우라면 본 문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적일 익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하면 'stale document'에 해당된다.¹⁰⁾

㉢ 세 번째 사항인 '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은 중계무역에서 만들어진 신용장하에서 볼 수 있는 문장이다. 'third party B/L acceptable'과 같이 표기되기도 하고 언급된 것처럼 표기되기도 한다.

신용장거래만을 본다면, 일반적으로 신용장상의 수익자는 물품의 제조·공급자이며 운송계약을 체결,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자이므로 상업송장과 운송서류상의 송화인란에는 수익자명이 기재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계무역의 경우 중계인(신용장 수익자)이 원수출상이 작성한 서류(상업송장 및 운송서류 등)를 이용, 제시한다면 은행은 이처럼 기대에 반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용장상의 수익자명과 그 서류의 작성자 혹은 송화인명이 상이한 점을 근거로 거절하려 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계무역에서의 중계인은 신용장상에 위의 문구의 기재를 요구해 왔던 것이나, UCP500에 이르러서는 제31조에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그 수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달리 표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UCP500이 사용된 지 10년이 되는 현재에까지 공표물에 이러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구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교육이나 홍보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중계무역의 경우 중계인은 원수출업자와 최종 수입업자가 서로간에 알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교환선화증권(switch B/L)을 사용하고 있다.

10) 한편 전국은행연합회 발간 금융지 2월호에 게재된 창원대학교 박세운 교수의 글 중 “그 서류가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된다면 선적일 후 21일 보다 늦지 않게 제시된 서류는 수리된다.”라고 번역한 부분은 명백한 번역상의 오류이므로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② 두 번째 문단의 표현들은 UCP 제정시의 규정에서부터 볼 수 있다. 즉, 1933년 제42조, 1951년 제42조, 1962년 제40조, 1974년 40조, 1983년 50조, 1994년 46조에서 이에 대한 해석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처음(1933년과 1951년 규칙)에는 30일 내의 선적으로 해석됨을 규정하다가 1962년부터 1983년 규칙까지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도 30일 내의 선적으로 해석됨을 규정하였는데, 1994년에는 30일 내의 선적으로 해석된다는 문장을 삭제하고 다만 은행이 무시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인데 첫째, 1962년 규칙에서부터 사용자체를 권고하는 규정을 두었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UCP500에 들어서는 30일로 해석된다는 문장을 삭제한 바 있으며 UCP500이 사용된 지 벌써 10년이 지난 작금에 이르러 ISBP에 위 표현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표현은 여전히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것이 초기의 규칙으로부터 1983년 규칙에서까지도 30일로 해석된다 는 규정을 두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언급한 바와 같이 해석규정을 삭제한 UCP500이 사용된 지 10년이 지난 작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것은 개정된 규칙의 내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부족도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본다.

둘째, 위 표현을 다루고 있는 UCP상의 규칙들은 'Shipment, Loading or Dispatch'(1933년부터 1974년까지), 'Loading on Board, Dispatch and Taking in Charge(Shipment)'(1983년), 'General Expressions as to Dates for Shipment'(1994년)라는 표제하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 이로 미루어 위 표현이 모두 선적일과 관련되어 사용된 경우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ISBP의 본 문단에서는 특별히 선적일에 한정하기보다는 'in any context'라 하여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즉, 어느 일자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7) Inconsistency in the documents

"신용장에서 제시된 서류는 서로간 모순된 것으로 보여져선 안된다. 이러한 요건은 데이터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서류가 모순되지 않아야 된

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는 엄격일치원칙과 관련한 사항으로 제시된 서류 상호간에 모순이 없기 위해 필요한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 한 편 본 문단이 기존의 것들보다 더욱 정밀하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이미 과거부터 여러 문헌들에서 주장된 바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의 1978.4.14. 결정 즉, 당시의 통일규칙 제7조의 ‘consistency’의 의미는 제시된 각 서류가 동일한 거래에 관한 것임이 분명할 것, 다시 말해, 각 서류가 다른 서류와 문면상 연결되고, 그 내용도 서로 충돌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모든 서류가 꼭 동일한 문구로 작성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고,¹¹⁾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은행은 … 제시된 서류가 형식상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합치하는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조사점검 할 의무가 있고 … 중략 … 다만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이하 생략)”라고 판시한 바 있다.¹²⁾

(8) Issuer of documents

“신용장에 서류는 기명된 자 혹은 기명된 법인에 의해 발행될 것이라고 표기되었다면, 이 조건은 당해 서류가 기명된 자 혹은 기명된 법인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면 충족된다. 서식의 사용에 의해 당해 서류가 기명된 자 혹은 기명된 법인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서식이 없다면, 당해 서류는 기명된 자나 기명된 법인 혹은 그 대리인에 의해 완성 및/또는 서명된 것으로 보인다.”

서류의 발행자에 관한 사항은 신용장거래를 벗어나서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신용장거래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선화증권 등 운송서류의 경우 그 서류 발행자는 운송계약상 운송물의 피청구인이며 또한 손해배상의 주체일 것이므

11) ICC Doc.470/328 &, 470/330.(제1용 채동현, 신용장 거래에 있어 원본서류의 판단 기준과 서류 심사에 대한 엄격일치원칙, 「저스티스」 통권 제70호, p.325)

12) 대법원 1985.5.28.선고 84다카696, 697판결.

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hird party document'와 같은 표현이 활용되었던 것 역시 서류발행자가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본 문단과 동일한 취지는 아니나 UCP500 제20조에서도 서류의 발행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신용장상에 그 발행인을 특정한 경우라면 그 발행인을 해당 서류에 명기함이 안전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그 발행인을 수기한 것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의 명칭이 인쇄된 서식을 사용한다면 이는 그 인쇄된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법인명을 별도로 표기할 필요는 없다 하겠다. 원본성과 관련하여 국제상업회의소의 유권해석이나¹³⁾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도 그 법인의 명칭이 인쇄된 서식을 사용한 점을 중요하게 취급하여 판단한 경우가 있다.¹⁴⁾

한편 글읽기가 부족한 필자로서는 마지막 문장의 함의를 파악할 수 없어 남겨둔다.

(9) Language

“국제표준은행관습하에서, 수익자가 발행하는 서류는 신용장상의 언어로 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용장에 둘 이상의 언어로 된 서류가 수리 가능하다고 표기했을 때, 피지정인은 그 신용장의 통지에서 신용장상 자신의 약정 혹은 확인의 조건으로 수리 가능한 언어의 수를 제한할 수도 있다.”

본 항은 '수익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신용장상의 언어로 작성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위 사항이 'expect'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수익자가 신용장상의 언어와 다른 언어로 서류를 작성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

“은행은 이를 서류거절의 근거로 삼을 수 있고 또 이러한 주장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

13) ICC, The determination of an "Original" document in the context of UCP500 sub-article 20(b),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 2 July 1999.

14)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다63619 판결.

빈번하지는 않겠으나 신용장상의 언어가 수익자의 모국어와 다르고 또한 수익자가 ISBP - 특별히 본 문단 - 를 미숙지한 상태라면 위 상황의 발생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위 질문에 대해 부정의 답을 내고자 한다.

본 문단의 내용을 은행이 서류상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일치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신용장상 요구되는 서류에는 수익자가 작성하는 서류 이외에 운송서류, 보험서류 등 제3자가 작성하는 서류도 포함되므로 수익자가 작성하는 서류만을 신용장상의 언어와 동일하게 작성케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거나 혹은 이익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 또한 스위스의 국제상업회의소 국내위원회의 Rene Muller에 의하면 신용장에서 특별히 언어에 대해 제한을 가지 않은 경우라면 서류는 어떤 언어로든 작성되는 것이 오늘날의 관행이라는 점, 또한 본 문단은 수익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신용장상의 언어로 발행되어야만 한다는 강한 어조를 수정한 것이라는 점¹⁵⁾ 등에 비춰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한편 필자의 이해 부족으로 그 인용이 부적합 할 수 있겠으나, ‘은행은 전문 용어의 번역 및/또는 해석상의 오류에 대하여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 (이하 중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UCP500 제16조 역시 부정의 답을 내리는 데 일역을 담당하지 않을 까 한다. 언급한 Rene Muller의 경우 본 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¹⁶⁾

(10) Mathematical calculations

“은행은 서류상의 상세한 수학계산을 검사하지 않는다. 은행은 신용장과 기타 요구되는 서류와 합계만을 검사할 의무가 있다.”

UCP500 제15조에 따라, 은행은 서류상 기재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면책된다. 이는 수학적 계산상의 착오에 관해서도 동일한데, 본 문단은 이를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상업회의소에서는 Doc. 470/TA.328에서 수량과 관련된

15) ICC, *DC Insight*, vol.9.no.1, Jan-March 2003, p.14.

16) Reinhard Langerich 역시 문제가 있는 항목으로 지적하고 있다.(ICC, *DC Insight*, vol.9.no.1, Jan-March 2003, p.15).

질의에 대해 “과거에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는 ‘은행은 기타 서류와의 일치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개별상품의 중량 또는 용적을 산출하거나 수학적인 계산을 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므로 총 수량이 포장명세서에 기재되길 원하였다면, 신용장에 그러한 사항을 명기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질의에서처럼 그러한 사항이 신용장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 포장명세서에는 선적된 물품에 대한 개별적 정보 또는 종합적인 정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총포장의 수가 기재된다면, 그것은 기타 서류에 기재된 수와 일치해야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답하고 있다. 이에 비춰 볼 때, 은행은 신용장상의 총금액 혹은 총수량 및 중량과 제시된 선적서류에 표기된 총금액과 총수량 및 중량만을 비교검토할 뿐 그 합계가 정확한가 하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¹⁷⁾

(11) Misspellings or typing errors

“단어 혹은 [오류가 발생한]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탈자 또는 타이핑오류는 서류를 하자로 만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machine’을 ‘mashine’으로, ‘fountain pen’을 ‘fountan pen’으로, ‘model’을 ‘modle’로의 상품표기는 당해 서류를 하자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model321’을 ‘model123’로의 표기는 타이핑오류가 아닌 하자에 해당된다.”

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게 되는 이유 중 물품명세의 표기오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이는 신용장거래의 기본원칙인 독립추상성원칙이 기여하는 바도 있다고 본다. 즉, 신용장거래에 참여하는 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형식상 제시된 서류와 신용장조건과 일치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나 위 기본원칙에 따라 은행원은 그 검토과정에 기본거래에 대한 사실확인은 물론 기본거래당사자들에게 문의할 수도 없다.

한편 상당한 주의라 함은 은행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지식경험에 의하여 기울여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가리키는 바, 은행원은 그 고유업무와 관

17)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으나 참조가 될 사건으로 W.L. Hamilton Engineering P.C. v. Bank Umum Servitia No. CV-99-02455-GHK(AJWx) (C.D. Cal. Sep. 27, 2000). ; Automation Source Corp. v. Korea Exchange Bank 670 N.Y.S.2d 847, 37 U.C.C. Rep. Serv. 2d (West) 372 (App. Div. 1998).

련해서는 충분한 지식경험을 축적한 상태일 것이나 기본거래 나아가 그 거래의 대상인 물품 및 그 명세에 대한 지식경험을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볼 것이므로, 그 고유업무가 아닌 물품명세의 상위에 관한 한 은행원에게 그 지식경험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잘못된 판단은 개설의뢰인과의 관계에서 갖게 된 권리의 행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므로 은행원이 물품명세의 상위의 중요도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 리스크한 행동이라 하겠다.

따라서 현명한 은행원이라면 물품명세의 상위에 관한 한 그 중요도를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일단 하자로 판단, 서류를 거절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이며 또 그것이 현실일 것이다.

이것이 본 문단의 핵심이라 본다. 즉, 본 항에서는 ‘단어나 그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또한 그것이 물품명세에 대한 지식경험을 보유하지 않은 채 서류를 검토하는 은행원 – 의미의 변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서류검토자 이므로 – 의 입장에서 명백할 때에 한하여 그 오탈자 혹은 타이핑오류가 서류를 하자로 만드는 것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오탈자나 타이핑오류가 사소한 것으로 취급될 것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시각은 “…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 ” 신용장조건과 일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¹⁸⁾에서도 볼 수 있다.

결국 은행원이 오탈자 혹은 타이핑오류를 – 특별히 상품명세와 관련된 것이라면 – 사소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의 판단은 주변 기재사항과의 연결을 통해 행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종래의 판례와 국제상업회의소에의 질의 및 응답 등을 정리함으로써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다.

(12) Multiple pages and attachment or riders

“신용장 혹은 서류에 달리 표기되지 않는 한, 물리적으로 합침되었거나, 이

18) 대법원 1985.5.28. 선고 84다카696, 697판결.

어지는 번호가 표기되었거나 혹은 내부의 상호참조를 포함하고 있는 페이지는, 페이지의 일부가 첨부자료로 간주되는 경우조차도, 그 명칭 혹은 표제에 관계 없이 하나의 서류로서 검토될 것이다. 어떤 서류가 하나 이상의 페이지로 구성된 경우, (여러) 페이지들이 동일 서류의 일부분임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한다.”

“하나 이상의 페이지로 구성된 서류에 서명 및/또는 배서가 필요한 경우, 서명은 서류의 첫 장 혹은 마지막 장에 위치해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용장이나 서류에 서명 혹은 배서가 위치할 장소를 표기하지 않은 한, 서명 혹은 배서는 서류의 어느 장소에서나 볼 수 있다.”

① 첫째 문단은 어떤 서류가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경우 당해 복수의 페이지 모두를 하나의 서류에 편입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문단은 서류의 일치성판단에 있어 제시된 서류와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여부는 당해 서류의 특정항목만의 검토에 한하지 않고 그 서류의 전체 기재사항의 검토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85.5.28. 선고 84다카696 판결“… 상품명세의 경우, 이는 상품의 명칭뿐만 아니라 그 상품을 특정하는 제한적 기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위 신용장의 상품명세란에 기재된 상품명칭외에 수량, 금액 및 원산지 등도 상품명세에 관한 기술이라고 볼 것인 바, 상업송장은 명세란외에 별도로 수량, 단가, 금액의 각란을 두어 상품명세에 관한 기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 각 란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신용장 기재와의 일치여부를 가려야 한다”)과 서류를 개별적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제시된 서류를 하나로 보아 전체적인 시각에서 그 일치성을 판단한다는 연계성 심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¹⁹⁾

19) 미국의 Voest-Alpine Trading U.S.A. Corp. v. Bank of China 사건에서도 법원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 The Issuing Bank must examine a particular document with a minor discrepancy in light of all of the documents presented

... The misspelling of the destination did not justify dishonor when the balance of the document on its face demonstrated a sufficient relationship with the transaction.

... The bank could have verified the letter of credit number in any other document presented or looked to the balanc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fax to find that the document as a whole bore an obvious relation with the transaction”(밀줄은 저자가 임의로 그은 것임)

(Bruce Nathan, *Business Credit* v.104 no1(Jan.2002) p.12~15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로는 <http://www.nacm.org>)

즉, 여러 페이지를 하나의 서류의 일부인 것으로 취급한다면, 일치성검사와 연계성검사에 페이지 전체가 고려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UCP500 제13조에 따라 은행은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제시인에게 반송하거나 송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해 페이지를 하나로 취급할 것인가 하는 점은 중요하게 된다.

본 문단에 따라 여러 페이지를 하나의 서류의 일부로 취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아래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물리적으로 합침되어 있다.

둘째, 페이지 번호가 연결되어 있다.

셋째, 페이지 내에 상호참조를 찾아 볼 수 있다.

위 3가지는 'or'로 연결되어 있어 동시적인 요건이 아니어서 어느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하나의 서류의 일부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위 3가지는 포괄적이고 배타적인 요건은 아니어서 여러 페이지를 하나의 서류의 일부로 취급할 수 있는 또 다른 요건은 있다고 본다. 이는 '어떤 서류가 하나 이상의 페이지로 구성된 경우, (여러) 페이지들이 동일 서류의 일부 분임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한다.'는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 마지막 문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3가지는 하나의 서류의 일부로서 판단함에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항목이라 하겠다.

② 두 번째 문단에 따라,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서류상의 서명 혹은 배서는 통상 그 첫장 혹은 마지막 장에서 볼 수 있으나 이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기타의 장소에 표기하였다 하여 그 법률적 성격에 흠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²⁰⁾

따라서 본 문단은 신용장 등에 달리 표기하지 않은 경우라면 서명 혹은 배서가 위치한 장소는 중요한 사항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다만 서류검토자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첫장 혹은 마지막 장에 그 요청되는 서명 혹은 배서를 함이 바람직스럽다고 하겠다.

20) 한편 전국은행연합회 발간 금융지 2월호에 게재된 창원대학교 박세운 교수의 글 중 "... 만약 서명 또는 배서가 요구되었다면 그것은 서류의 첫 페이지 또는 마지막 페이지에 표시되어야 한다.(중략)"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번역이 다소나마 투박한 탓에 원문과 비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첫 페이지나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야 만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13) Originals and copies

“하나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된 서류에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First Original’, ‘Second Original’ 등으로 표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표기 중 어느 것도 서류를 원본으로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지 않는다.”

“신용장에 사본의 제시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요구되는 각 서류는 적어도 하나의 원본으로 제시되어야만 한다. 제시될 원본의 수는 적어도 신용장 또는 UCP에서 요구하는 수이거나 특정 서류에 그 발행된 원본의 수를 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류에 표기된 수여야만 한다.”

“신용장상의 문맥으로부터 당해 신용장이 원본을 요구하고 있는지 사본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 또한 당해 조건이 원본에 의해 충족되는지 사본에 의해 충족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때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신용장에

‘Invoice’, ‘One Invoice’ 혹은 ‘Invoice in 1 copy’라고 표기된 경우, 원본송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Invoice in 4 copies’라고 표기된 경우, 적어도 하나의 원본과 나머지 수의 사본의 제시에 의해 충족될 것이다.

‘One copy of Invoice’라고 표기된 경우, 송장사본의 제시에 의해 만족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문에서는 사본 대신 원본을 수령하는 것이 표준은행관행이다.”

“원본이 사본 대신에 수리되지 않는 경우, 신용장은 ‘photocopy of invoice – original document not acceptable in lieu of photocopy’ 등과 같이 원본을 금지해야만 한다.”

“ICC 은행위원회의 Policy Statement, Document 470/871(Rev) “The determination of and ‘Original’ document in the context of UCP sub-Article 20(b)”는 원본과 사본에 대한 안내물로 추천된다.“

- ① 본 항목은 최근 수년간 논란이 되어왔던 원본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문제는 UCP500 제20조 (b)항의 해석 및 그 적용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예컨대 1995년 영국의 Glencore 사건과²¹⁾ 1999년 Kredietbank 사

건,²²⁾ 미국의 Voest-Alpine 사건²³⁾에서는 모두 서류에 원본이라는 표기의 유무가 원본성을 결정하는 요소인가 하는 점을 다투고 있는데, 원본성은 그 작성자의 원본작성의사의 추론을 통해 판단되어야 할 것임을 들어 대부분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우리나라의 판결들²⁴⁾에서도 마찬가지로, 위 판결들과 결부시켜 생각할 때 첫째 문단의 “… may be marked ‘original’…”라는 문장은 원본성판단에 있어 원본 표기의 유무 및 그 용어가 아닌 그 작성자의 의사가 중요한 요소임을 함의하고 있다고 본다.

② 두 번째 문단의 첫 문장은 복본의 서류에 대한 조건은 하나의 원본과 사본으로 구성된 서류의 제시에 의해 충족됨을 규정한 UCP500 제20조 (c)항 ii 호와 그 내용을 함께 하고 있다. 다음으로 둘째 문장에서는 제시될 원본의 수를 다루고 있는데, (1) 신용장상의 규정된 수이거나 (2) UCP에 규정된 수 혹은 (3) - 서류에 원본발행숫자를 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 그 표기된 숫자로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UCP500에서 다루고 있는 서류를 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으로 大別 할 수 있고, 이 중 운송서류는 해상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복합운송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철도·도로·내수로운송서

- 21) Glencore International Ag And Another v. Bank of China,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1995] 1 Lloyd's Rep 135, Hearing-Dates : 23 October, 8 November 1995.(본 사건에서는 UCP500 제20조 (b)항에 의하여 문서에 ‘원본’이라는 표시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문서는 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22) Kredietbank Antwerp. v. Midland Bank Plc ; Karaganda Ltd v. Midland Bank And Another,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The Independent 7 May 1999.(본 사건에서는 letterhead에 칼라로고가 타이프되어 있고 잉크로 된 서명을 포함하는 경우 비록 ‘원본’이라는 표시가 문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원본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23) Voest-Alpine Trading USA Corp. v. Bank of China, Civil Action No. H-95-4954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Texas, Houston Division 2000 U.S. Dist. Lexis 8223 March 10, 2000, Decided, March 13, 2000, Entered.(이 사건에서 피고 중국은행이 포장명서에 ‘원본’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원본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해당 서류는 잉크로 된 서명이 되어 있는 명백한 원본이므로 원본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원본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24) 서울고등법원 1999.8.24. 선고 98나18072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4.6. 선고 2000가합955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5.25.선고 2000나53535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12.7. 선고 2000가합402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8.21. 선고 2001나1906판결(서울지방법원 2000.12.7. 선고 2000가합40228 판결의 2심판결)

류, 특사 및 우편수령증의 7가지로 세분되는데, 이때 언급된 모든 서류의 관련 조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위 운송서류 중 해상선화증권(23조 (a)항 iv호), 해상화물운송장(24조 (a)항 iv호), 용선계약부 선화증권(25조 (a)항 vi호), 복합운송증권(26조 (a)항 iv호)은 동일한 문장으로 전통을 요구하고 있을 뿐 별다른 단서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둘째, 항공화물운송장(27조 (a)항 v호)은 전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송화인용 원본 1통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도로·철도·내수로운송서류(28조 (b)항)의 경우에는 운송서류에 발행된 숫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시된 운송서류를 전통인 것으로 보고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서류(34조 (a)항)의 경우에도 보험서류에 그 발행된 원본의 수가 표기된 경우에는, 신용장에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원본전통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특사 및 우편수령증(29조)과 상업송장(36조)의 경우에는 원본의 통수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항목에 속하는 서류의 경우, 명시된 경우 신용장에 명시된 숫자의 원본 제시가 요구되고, 신용장에 표기가 없는 경우에 UCP의 규정에 따라 그 서류에 발행통수가 표기되어 있는가에 관계없이 전통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항목에 속하는 서류의 경우, 신용장상의 표기에 관계없이 UCP의 규정에 따라 송화인용 원본만을 제시하면 된다.

따라서 첫째 항목의 경우에는 사적 자치가 우선하나, 둘째 항목은 그러하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항목에 속하는 서류 중 도로·철도·내수로운송서류의 경우에는 신용장상에 표기가 있다면 그 숫자로의 제시가 요구되고, 신용장상에 표기가 없다면 두가지로 나뉘어서 ① 서류에 그 발행통수가 표기된 경우는 표기된 수의 원본의 제시가 필요하고 ⑥ 미표기된 경우는 수익자에게 달려 있다.

다음으로 보험서류의 경우, 신용장상에 표기가 있다면 그 숫자로의 제시가 요구되고, 신용장상에 표기가 없다면, 두가지로 나뉘어서 ④ 서류에 그 발행통수가 표기된 경우는, 표기된 수의 원본의 제시가 필요하고 ⑥ 미표기된 경우는 명확한 답을 알 수 없다. 아마도 위와 마찬가지로 수익자에게 달려 있지 않을

까 한다.

따라서 첫째 항목과 셋째 항목에 속하는 서류는 모두 사적 자치원칙 즉, 신용장에 표기된 것이 우선하여 그 표기된 수로의 원본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서는 동일하나, 신용장상에 표기가 없다면 첫째 항목의 경우에는 당해 서류에 발행 통수의 표기유무에 관계없이 전통을 요구하고 있으나 셋째 항목의 경우에는 당해 서류에 발행 통수를 표기한 경우에 한해 전통을 제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즉, 신용장상에 표기가 없고 또한 서류에 원본의 발행통수가 미표기된 경우에, 첫째 항목에 속하는 서류는 원본 전통을 제시해야 하나 셋째 항목에 속하는 서류는 원본전통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점은 수익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넷째 항목에 속하는 서류의 경우,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사적 자치원칙이 적용되어 신용장에 표기된 수의 원본의 제시가 요청된다. 이때 단서 조항이 없으므로 당해 서류에 발행 통수가 표기되어 있는가 하는 점은 고려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을 본 문단의 둘째 문장과 연계하여 정리하면, 첫째 항목과 넷째 항목에 속하는 서류는 (1) 신용장에 규정된 수, 둘째 항목에 속하는 서류는 (2) UCP에 규정된 수, 셋째 항목에 속하는 서류는 (3) 그 (서류에) 표기된 수와 각각 대응시킬 수 있겠다.

③ 세 번째 문단에서는 그 해석이 어려운 표현의 예를 들어 보이고 있는데, 그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의 의문이 있다.

첫째는 a)과 c)의 해석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a)에서는 'Invoice in 1 copy'를 원본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c)에서는 'One copy of Invoice'를 사본의 제시로 충분한 것으로 해석하여 그 해석이 상이하다. 어쩌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필자가 그 뉘앙스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우문을 던지는가도 알 수 있으나 신용장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영어에 정통한 자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우문을 던져본다.

두 번째 의문은 c)의 둘째 문장에서처럼 원본을 받는 것이 국제표준은행관습이라면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14) Shipping Marks

“하인의 목적은 박스, 가방, 포장의 식별을 가능케 하는데 있다. 만약 신용장에 하인의 세부사항을 기재하고 있다면, 그러한 하인을 표기하는 서류에는 그 세부사항을 기재해야만 한다. 그러나 추가적인 정보는 - 그것이 신용장의 조건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 허용된다.”

“일부 서류에 포함된 하인에 통상 하인으로 간주되는 것 이상의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또한 물품의 유형,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취급에 대한 경고, 물품의 순중량 및/또는 총중량과 같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서류에 - 기타 서류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 그와 같은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하자가 아니다.”

“컨테이너화된 물품을 다루고 있는 운송서류의 ‘Shipping marks’라는 표제 하에 컨테이너 번호만이 기재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상세한 하인을 기재하고 있는 기타 서류는 그러한 이유에서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 항목은 먼저 어떤 표기의 목적을 밝힌 후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면 단순히 그 요청된 사항이외의 것이 기재되었음을 문제로 삼을 수는 없음을 밝히고 있다.

즉, 첫째 문단의 첫 문장에서는 하인의 목적을 밝힌 후 하인의 목적인 그 운송물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표기가 있다면 추가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 만으로 당해 서류를 하자로 만드는 것은 아님을 두 번째 문장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서 반복해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첫째 문단의 두 번째 문장에서는 ‘the document(s) mentioning the marks’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신용장에 상세하게 하인을 표기한 경우에 신용장상에 표기된 그 상세한 하인을 모두 표기해야 할 서류로 -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서류가 아닌 - 하인을 표기하는 서류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운송서류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포장명세서도 포함될 수 있겠다.

따라서 신용장상의 상세한 명세를 표기할 서류는 위에 언급된 서류에 한정되고 기타 서류의 경우에는 상세한 명세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겠다.

한편 추가적인 정보가 기재된 경우를 다루고 있는 첫째 문단의 두 번째 문

장과 둘째 문단은 전자는 당해 서류와 신용장과의 불일치가 아님을 규정하고 후자는 서류 상호간에 모순을 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15) Signatures

“신용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어음, 증명서 그리고 선언서는 그 성격상 서명이 필요하다. 운송서류와 보험서류는 UCP의 규정에 따라 서명되어야만 한다.”

“어떤 서류에 서명을 위한 박스 혹은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박스 혹은 공간이 반드시 서명으로 채워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항공화물운송장이나 도로운송서류와 같은 운송서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signature of shipper or their agent’ 등으로 표제된 영역에 서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서류가 문면상 그 유효성을 위해 서명을 필요로 한다면, 서명되어야만 한다.”

“서명은 수기로 행해질 필요가 없다. 팩시밀리서명, 천공서명, 스탬프, 심볼 또는 모든 전자적 혹은 자기적 인증수단은 충분하다. 그러나, 서명된 서류의 복사본은 – 원본서명이 없다면 – 서명된 원본서류로서의 자격을 갖지 않으며, 이는 팩스기를 통해 전송된 서명된 서류 역시 동일하다. 어떤 서류에 서명 및 스템프되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은 마찬가지로 서명과 서명자의 (타이프, 스템프 혹은 수기 등으로 표기된) 이름에 의해 충족된다.”

“어느 기업의 서식 위의 서명은 – 달리 기재되지 않았다면 – 당해 기업의 서명으로 취급될 것이다. 당해 기업의 명칭이 서명에 추가하여 재 기술될 필요는 없다.”

① 앞서 언급한 바 환어음은 그 요식성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서류인 탓에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증명서/선언서는 그 기재사항 및 서류의 진정성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발행자의 서명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보험서류와 운송서류에 대해서는 UCP에 개별 조항을 두고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② 세 번째 문단의 첫 문장은 UCP500 제20조 (b)항 그리고 동 항의 해석을

담고 있는 1999년 7월 2일자의 ICC Policy Statement(The determination of an 'Original' document in the context of UCP500 sub-article 20(b))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두 번째 문장은 위 ICC Policy Statement의 내용 중 'Photocopies'와 'Telefaxed presentation of documents'하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세 번째 문단의 두 번째 문장에서는 - 서명 뿐 아니라 - 원본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원본과 사본에 대한 문제는 본 공표물의 para.31로부터 para.35 까지에 이르기까지 다루고 있으므로 중복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기 쉽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signed original document'라는 문구를 통해 서명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즉, 위 ICC Policy Statement에서는 원본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경우를 (A), (B), (C)의 3가지로 나누어 다루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서명의 유무가 원본성을 결정하는 배타적인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명이 없는 원본도 존재할 수 있다. 즉, 'original document'와 'signed original document'의 구별이 가능하다. 따라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신용장에서 단순히 원본이 아닌 특별히 서명된 원본을 원하는 경우라면 'photocopy'는 별도의 서명이 없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²⁵⁾

③ 네 번째 문단의 경우에는 'letterhead'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법인의 서식에 있는 개인의 서명은 당해 법인의 서명에 해당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letterhead'가 있는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경우로 원본성을 판단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위 ICC Policy Statement에서는 'photocopy'는 원본이 아니나 'letterhead'를 가진 서류에 'photocopy'한 경우에는 당해 'photocopy'도 원본으로 취급됨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2002.6.28. 선고 2000다63691 판결에서 역시 제시된 서류에 'letterhead'가 인쇄되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취급한 바 있다.

25) 즉, 'photocopy'는 그것이 원본이 아니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원본으로 취급된다. 다만 단순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는 'signed original document'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16) Title of documents and combined documents

“서류는 신용장에 규정된 명칭 혹은 유사한 명칭을 갖거나 명칭이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Packing List’에 대한 신용장상 요구는 ‘Packing Note’, ‘Packing and weight List’ 등의 제목을 사용했거나 혹은 무제의 서류인가에 관계없이 포장 명세를 포함하고 있는 서류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 서류의 내용은 요구되는 서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야만 한다.”

“신용장에 기재된 서류들은 독립된 서류로 제시되어야 한다. 신용장이 포장명세와 중량증명서를 요구한다면, 그러한 요건은 독립된 두 개의 서류 혹은 – 당해 서류가 포장명세와 중량명세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 – 포장명세서와 중량증명서의 복합된 서류의 원본카피 2통의 제시에 의해 충족될 것이다.”

① 첫째 문단에서는 어떤 서류의 제목이 아닌 그 기재내용이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가를 판단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본 문단은 UCP500의 서류관련 규정과 최근의 국내판결에 비추어서도 이견이 없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즉,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의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UCP상의 조항들에는 모두 “그 명칭에 관계없이”(however named)라는 문구를 두고 있어 당해 서류의 제목이 중요한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으며, 해상선화증권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하에서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에 복합운송선화증권이란 제목이 붙어 있는 경우 당해 서류를 해상선화증권의 수리요건을 규정한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일치여부를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다퉈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29469 판결에서도 “중략 …,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가 해상선화증권인데 수익자가 제출한 선화증권이 복합운송선화증권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신용장이 규정하고 있는 조건과 제출된 서류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제출된 서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서류의 종류에 따라 해당 운송서류가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하는 있는 수리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려 신용장대금의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만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그 제목이 중요한 것은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

② 두 번째 문단과 관련된 사항을 UCP500 제38조에서 찾을 수 있다. 동 조는 '해상운송 이외의 운송에 있어서 신용장이 중량증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운행은 신용장에서 중량증명이 별도의 서류에 의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운송서류상에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에 의하여 부기된 것으로 표시된 중량타인 또는 중량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된 서류의 제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첫째, 동 조는 해상운송 이외의 운송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본 문단은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 둘째, 동 조는 운송서류와 중량증명서를 언급하고 있으나 본 문단은 운송서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 있어 차이가 있다.

동 조에서는 해상운송서류에는 일반적으로 중량에 관한 사항이 당해 운송서류에 기재되므로 별도의 중량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으나 기타 운송서류에는 그러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는 것이 아닌 탓에 중량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중량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관행을 반영한 것이고 이때 운송서류에 당해 정보가 기재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²⁶⁾

두 번째의 차이점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두 번째 문단에 운송서류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운송서류에 중량 혹은 포장에 대한 명세가 기재되어 있다면 운송서류를 한통 더 제시함으로써 중량 혹은 포장명세서에 대한 요구는 만족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신용장상에 규정된 서류에 두 가지의 기능 - 예컨대 포장명세서와 중량증명서 - 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인데, 그 중 포장명세서와 중량증명서는 그 요구되는 기재사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하나의 서류가 양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가능성성이 높은 탓에 본 공표물에서 인용되고 있을 뿐이고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공표물에서 인용한 예들은 배타적이고 포괄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26) 양영환·서정두, 『신용장사례연구』, 삼영사, 1995, p.332.

III. 결론

미국 미시건대학 법과대학의 Ronald J. Mann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500건 중 27%인 135건만이 첫 번째 제시시에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다.

먼저 부적절한 혹은 부정확한 내용으로의 신용장개설을 들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의 신중함은 서류의 거절빈도를 상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본다. 개설단계에서의 실수는 일자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겠다. 신용장의 선적일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유효기간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실수는 원인계약상의 내용과 신용장상의 내용이 불일치도 있겠는데, 예컨대 원인계약으로 FOB를 선택하였으나 신용장에 요구되는 서류로 보험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실수는 개설단계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편 신용장 개설단계에서의 신중함이 중요하다는 점은 UCP500 제5조의 규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서류검토시의 기준 특별히 UCP500 제13조에 언급된 국제표준은행관습과 관계 있다.

즉, 위 제13조에서는 “국제표준은행관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정의나아가 그 범위에 대한 추가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이를 현실에서 어떻게 응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특정 상황하에서 이러한 행동이 국제표준은행관습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질의가 끊이지 않았고 특별히 시티은행의 Gary Collyer가 2001 Annual Survey of LC Law & Practic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위 제13조와 관련된 질의는 94년부터 2000년까지 7년간의 opinion중 29%를 차지한 제23조 다음으로 많은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2년 반 동안의 작업을 통해 각 서류의 검토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공표물을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라는 제목하에 발간하기에 이른 것이다.

본 고에서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이는 신용장통일규칙의 완성을 목적으로

발간된 것이므로 본 공표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이해를 근저에 두고 본 공표물에 기술된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함은 물론 통일규칙에 투영된 제 원칙과의 모순 여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축적된 법원의 판결과 적어도 1994년 이후에 국제상업회의소가 발간한 자료에 반영되어 있는 공식적인 의견과의 충돌가능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는 본 공표물에 반영된 사항들은 차후 신용장통일규칙의 개정작업에서 고려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본 공표물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몇몇 부분에서는 그 충돌 혹은 모순되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본 고를 작성하기까지의 본 공표물에 대한 연구시간은 불과 수개월에 불과하여 각 문단의 함의를 다 읽어내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또한 필자의 글읽기가 부족하고 본 공표물이 담고 있는 그 주제들에 대한 애정 또한 애매함이 부족하여 문단의 함의로 판단하여 풀이한 부분에서는 단순한 논리적 오류가 아닌 뿌리깊은 병집이 있을 수도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글을 통한 선학들의 비판을 기다릴 뿐이다.

참고문헌 및 판례

- 서희원, 『영미법강의』, 박영사, 1994
- 서정두, ISBN(신용장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주요내용과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8.
- 양영환·서정두, 『신용장사례연구』, 삼영사, 1995.
-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제3개정판), 흥문사, 1999
- 최기원, 『상법학개론』, 박영사, 1997
- 채동현, 신용장 거래에 있어 원본서류의 판단기준과 서류 심사에 대한 엄격일 치원칙, 『저스티스』 통권 제70호
- Bruce Nathan, *Business Credit* v.104 nol(Jan.2002)
- ICC, *DC Insight*, vol.9.no.1, Jan-March 2003, p.14.
- ICC, The determination of an "Original" document in the context of UCP500 sub-article 20(b),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 2 July 1999.
- ICC, Doc.470/328
- ICC, Doc.470/330.
- ICC, Doc.470/TA.294.
- ICC, Doc.470/TA.289Rev
- ICC, Doc.470/TA.328
- 서울고등법원 1999.8.24. 선고 98나18072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1.4.6. 선고 2000가합9551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1.5.25. 선고 2000나53535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0.12.7. 선고 2000가합4022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1.8.21. 선고 2001나1906판결(서울지방법원 2000.12.7. 선고 2000가합40228 판결의 2심판결)
- 대법원 1985.5.28. 선고 84다카696, 697판결.
- 대법원 1985.5.28. 선고 84다카696, 697판결.
-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다63619 판결.
- W.L. Hamilton Engineering P.C. v. Bank Umum Servitia No. CV-99-02455-GHK(AJWx) (C.D. Cal. Sep. 27, 2000).
- Automation Source Corp. v. Korea Exchange Bank 670 N.Y.S.2d 847, 37 U.C.C. Rep. Serv. 2d (West) 372 (App. Div. 1998).

Glencore International Ag And Another v. Bank of China,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1995] 1 Lloyd's Rep 135, Hearing-Dates : 23 October, 8 November 1995.

Karaganda Ltd v. Midland Bank And Another,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The Independent 7 May 1999.

Voest-Alpine Trading USA Corp. v. Bank of China, Civil Action No. H-95-4954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Texas, Houston Division 2000 U.S. Dist. Lexis 8223 March 10, 2000, Decided, March 13, 2000, Entered.

ABSTRACT

A Study on General Principles of the ICC Publication No.645(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Kim, Young Hoon

Many presentations of documents are rejected because credits have been incorrectly issued.

One reason of rejecting the documents is related with error in application stage of L/C.

Errors may take the form of mismatches between the terms of the sales contract and the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credit. Thus, Article 5 encourages applicants to make their contribution to the smooth running of the letter of credit process by being unambiguous and brief.

Another reason that the banks reject the documents relates to the ambiguity of the term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That is to say, UCP500 Art.13 introduced the term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without the definition so that one wonder what ISBP is or how ISBP apply in daily work of bankers, examination of documents.

From henc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started the work to document ISBP at May 2000, finally approved the result last year and published the publication title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By applying ISBP in document examination stage, I expect that the frequency of rejecting the documents grow less and bankers' work of examination become easy.

On the other hand, ISBP is supplement to UCP500 so that the

interpretation of ISBP is made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of UCP and its underlying principles.

So, I reviewed each paragraphs of ISBP on this basis and tried to indicate contradiction between ISBP and UCP500. But because of reading not enough, I failed to search the connotative sense many paragraphs have.

Key words :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UCP500,
rejection of document